

전임교수 연구년 운영 규정

2008.03.0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일정 기간 동안 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국제영어대학원 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수의 연구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구년이라 함은 본교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전임교수가 강의와 학생지도 등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에만 전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선정기준) ① 연구년을 활용하고자 하는 교수는 교육 및 연구 실적이 현저하며, 연구에 전념함으로써 학문 발전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동일한 학기의 연구년 대상 교수가 1인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기간) 연구년은 당해 교수가 6개 정규학기 동안 강의한 경우에는 1개 학기(6개월)간, 12개 정규학기 동안 강의한 경우에는 2개 학기(1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선정절차) ① 연구년을 활용하고자 하는 교수는 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교무처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지장 유무, 학과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추천자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제6조(선정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년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국내·외 파견, 연구년, 휴직 및 교류교수 등으로 3년 이내에 1개 학기(6월) 이상의 강의면제를 받았거나, 6년 이내에 2개 학기(1년) 이상의 강의면제를 받은 자
2. 교내·외 연구비를 수령하고 결과 보고 기일 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연구년 기간 종료일로부터 정년 퇴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제7조(복무) 연구년에 선정된 교수가 본교 이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서 제출) 연구년에 선정된 교수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년 활동보고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수 연구년 신청서

소 속: _____ 학과 _____ 직 명 _____ 성 명 _____

- 연구년 희망기간: _____ 년 월 일부터 _____ 년 월 일 (개학기)
 담당과목 계속 개설을 위한 방안

구 분	신청교수 담당과목		연구년 기간중 담당과목 개설 방안				비 고
			타전임 교수가 담당		과목 개설 시기 조정		
	교과구분	교과목번호(과목명)	직 명	성 명	격학기 (개설학기)	격년 (개설학년도)	
1학기							
2학기							

위와 같이 20 _____ 학년도 연구년을 활용하고자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 첨 부: 1. 연구계획서 1부.
2. 연구실적서 1부.

20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신청 교수 직 명 : _____ 성 명 : _____ (인)

소속학과장 직 명 : _____ 성 명 : _____ (인)

위 교수를 20 _____ 학년도 연구년을 활용할 교수로 추천합니다.

20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교무처장 _____ (인)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총장 귀하

연구 계획서

소 속: _____ 학과 _____ 직 명 _____ 성 명 _____

1. 연구과제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연구내용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동향

5. 참고문헌

6. 연구기간

7. 연구결과 발표예정일 및 발표기관(발표학술지명)

8. 기타사항

* 본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 제출(분량 많을시 별지작성)

